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551 발의연월일: 2020. 11. 19.

발 의 자:이상헌・김정호・양정숙

이병훈 · 이상직 · 홍정민

안민석 · 윤관석 · 문진석

김성주 • 전용기 • 이규민

신동근 • 유정주 • 김승원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은 1983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불분명한 해석을 낳아 잦은 민원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그러한 촬영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법률의 불명확성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한편, 지정이나 등록되지 않은 동산문화재(이하'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조건으로 국외 전시를 위한 국외 반출은 가능함. 그러나 10년 내 반입을 조건으로 한 일반동산문화재 국외 반출의 경우 현행법상 반출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코로나19 등 국외 전시 상황 변화에 대한 비탄력성을 초래하고 있고, 국외 반출 문화재의 보존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임.

이에 반출 시점부터 10년의 범위 안에서 반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반출기간 동안 반출된 일반동산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 등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외 전시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 및 제60조).

법률 제 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촬영을 하는"을 "촬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제60조제4항 중 "문화재청장"을 "제40조제1항제8호를 준용하여 문화재 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재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당초 반출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 ⑧ 제1항 단서 및 제7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반출·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문화체 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⑨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현황 및 보존·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	제35조(허가사항) ①
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	
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	
재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	
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	
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	
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	
다)를 받아야 한다.	<u>.</u>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3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u>촬</u>	<u>촬</u>
<u>영을 하는</u> 행위	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제60조(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제60조(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① ~ ③ (생 략)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 ④ -----자는 허가된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 우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신 설>

<신 설>

② ~ ⑤ (현행과 같음)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 제40조제1항제8호를 준용하

여 문화재청장-----

(5)·(6) (현행과 같음)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재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 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 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당초 반출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⑧ 제1항 단서 및 제7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반출・ 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 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다.

<신 설>

⑨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현황 및 보존・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